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제안 이유

인구가 날로 소멸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아동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4. 돌봄사업 운영과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5.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아동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 (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 (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통합체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돌봄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돌봄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5.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6. 초등돌봄교실 사업
7.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
8. 그 밖에 돌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가 직접 운영한다.

제8조(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연계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사업
6. 마을돌봄사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통합아동돌봄 협의회 설치·기능) 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마을돌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8.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통합아동돌봄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의 아동돌봄 지원사업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영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돌봄 관련 교수 및 아동 특성에 따른 돌봄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아동의 특성, 연령, 돌봄환경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공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 마을돌봄 시설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협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